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찍은 스냅사진을 삽화로 게재하였더라도 위자료청구권이나 부당이득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Bonn Amtsgericht 1989. 5. 19 자 판결

- 16C 11/89 사건 -

적용법조

독일민법 제 812 조, 제 823 조, 제 1004 조

판결요지

언론기관의 사진사가 그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찍은 즉흥사진을, 그 사진을 적은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삽화의 목적으로 이를 게재한다고 하더라도, 위자료청구권이나 또는 부당이득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개요

원고는 이전에 Bonn에서 일하고 있었다. 원고는 B. 부티크 회사의 사장인 B 부인과 서로 아는 사이였다. 자세히 알 수 없는 시기에 피고의 사진담당 편집인인 S. 씨가 위 부티크에 나타났었다. S.씨는 위 기회에 원고의 사진을 한장 적었다. 위 사진에서 원고는 맥주 테이블에 앉아서 가득 찬 한잔의 맥주를 마시고 있는 모습으로 적혀 없었다. S.씨는 위 사진을 원고의 동의를 얻어서 적었다. 피고는 그가 발행하는 신문의 1988. 5. 5 자판에서, Kölsch 맥주의 가격 인상이 임박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위 보도에는 위 S. 사진편집인이 적은 원고의 사진이 삽화로서 게재되어 있었다. 위 사진은 크게 게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사진에 나타난 인물이 원고라는 것을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 동안 Essen 출신의 의사와 결혼해 있었던 원고는 위 보도가 있었던 당시에 임신 중에 있었다. 위 사진의 공표가 있는 후, Bonn으로부터, 그녀를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 자신에게 연락을 취해 왔다고 원고는 주장하였다. 그리고 위 원고의 아는 사람들은, 원고가 임신중이면서도 많은 양의 알코올을 마시고 또한 「사 신모델로서 소일하고」 없는 데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말하였다고, 원고는 주장하였다. 또한 원고의 남편에게도 「여러 방면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었다고 한다. 그리고 위 전화통화에서, 전화를 걸어온 사람들은 원고의 과거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원고의 신혼가정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였다고 원고는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흥분으로 원고자신의 건강은 물론이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건강도 역시 크게 위협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4000 마르크의 위자료와 1000 마르크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이 점에 대하여, 원고는 위 공표된 사진에 대한 직업적인 모델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는 1000 마르크는 주어야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판결이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아무런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가 위 사진을 공표함으로써 인하여 원고의 일반적인 인격권이나, 또는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 및 그리하여 원고가 독일민법 제 823 조 제 1 항 내지는 KUG 법제 22 조와 관련하여 독일민법 제 823 조 제 2 항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지의 여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독일민법 제 847 조에 따라서 위자료의 청구를 할 수 없기 위하여는 위 두가지의 경우에 모두 원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위 사진의 공표로 인하여 일반 공중에 있어서의 원고의 명성을 깎아 내리기에 적합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위 사진을 공표하게 된 원인 내지는 동기와 공표한 사람의 과실의 정도가 중대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BGH, NJW 1980, 2801[28071, OLG Karlsruhe, NJW 1989, 401(4021 참조). 그런데 우선 원고의 일반적인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이 사건에 있어서는, 발생하였다고 할 수가 없다. 즉 위 사진은 원고를 명예가 훼손될만한 상황에서 묘사하였다고 할 수가 없다. 맥주 테이블에 앉아서 한잔의 Kölsch 맥주를 즐기고 있는 행동을, 일반대중들은 틀림없이 별로 해가 없는 것으로 관용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원고가 그 당시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원고의 친지들이, 위 사진을 보고서, 원고가 임신중에도 Kölsch 맥주를 마셨다고 생각하였음에 틀림 없다는 것은 일단 옳은것으로 여겨진다. 이 점에 관하여, 위 원고의 친지들은 위 사진이 원고가 임신하기 이전에 이미 적혀진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이 점에서는 원고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원고의 친지들 사이에서 원고가 임신 중에도 맥주를 마셨다는 인상이 설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원은 이러한 인상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성이 현저하게 침해되었다고는 여기지 아니하는 바이다. 즉 위 사진으로 인하여, 원고가 지나치게 알코올을 즐기고 있다는 인상은 발생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위 사진을 보는 사람들은, 원고가 따뜻한 봄날에(이는 썬글라스와 높이 걸어 올린 소매로부터 알 수 있다.) 한 잔의 시원한 맥주로, 기분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을 연상할 수 있을 것이다. 원고는 또한 위 사진이 공표됨으로 인하여 자신 및 태아가 건강상의 손해를 입었고, 가정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즉 원고의 건강이 어느 정도로,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침해되었는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없으며, 그리고 그 당시에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어린애가 건강상의 위험을 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원고는 그 동안 어린애를 출산하였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은, 원고의 신혼생활이 심각한 위험에 봉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원고의 남편을 사모하던 이전의 여인들이, 피고가 공표한 위 사진을 보고서, 원고의 결혼 전의 생활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당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바이다. 오히려 그 대신에, 위 사진의 공표의 결과가 현저하게 과장되어져 있다고 하는 인상을 당원은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두번째로, 피고의 과실은 아주 경미한 것으로 여겨진다. 위 사진이 공표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기분 좋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욕을 받았다고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은, 피고로서는 쉽게 알 수가 없는 것이었다. 위 사진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인용한 판례의 경우와는 반대로-내적인 영역 이나, 성적인 영역에

관계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위 사진은 결코, 도벽에 반하는 것이거나, 파렴치한 내용의 것은 아니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독일민법 제 812 조 제 1 항, 제 1 문, 또는 제 2 문에 기하여 1000 마르크의 지급을 청구할 수도 없다. 아무런 동의도 없이 사진이 공표되었고, 그리고, 그 동의가 통상적으로 대가를 받고서만 행해지는 경우에 있어서, 사진이 공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보상의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판례는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경우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위 사진의 공포가 원래의 목적과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행해진 경우에만,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원의 견해에 의하면, 이 사건 사진의 공표는 원고가 원래 동의한 범위내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여겨진다. 위 동의는 의사표시로서, 독일 민법 제 133 조의 기준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수령한 자의 입장에서 해석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위 범위에서는 피고를 대리하고 있는 대. 사진편집인이 원고의 행동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되는 것이다. 사진편집인의 시 각에서 보면, 대화의 상대방은 B. 부티크의 소유자인 B. 부인이었다. 사진사는 위 B. 부인의 동의를 얻어서 위 부티크에서 일하고 있던 여자종업원에게 접근하였고, 위 사진사는, 그 종업원에게, 사진 찍는데에 대상으로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던 것이다. 원고가 위 B. 부티크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위 사진사로서는 알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B. 부인과 마찬가지로 원고도 역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찍혀진 사진은 오로지 B. 부티크의 선전목적으로만 사용될 줄로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원고는, 원고의 이와같은 생각이 어떠한 방법으로 S. 사진사에게 전달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입증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 사진사가, 위 B. 부티크의 비용부담으로 위 사진을 현상하고 인화하였다면 위 사진은 위 B. 부티크의 선전만을 위한 목적으로 찍혀진 것이라는 추단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원고는 스스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사진사가 명백히 피고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었다면, 위 선전목적으로의 제한은, 사진의 내용으로부터도 나타날 수 있었을 것이었다. 이는, 위 사진이 명백히 B. 부티크의 선전목적에 적합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진의 경우에는 사정이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사진은 B. 부티크의 선전 목적을 위하여는 분명히 적합하지 아니하다. 위 사진 상에는 어떠한 웃감이나 또는 악세사리들이 명백히 나타나 있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위 사진에 적힌 원고가, 위 B. 부티크의 선전을 위해서 나온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다. 오히려 반대로, 위 사진은, 어떤 상황을 적은 것으로서, 피고의 사진목록에 보관되어 있으면서, 그 목적에 따른 보도에 상응한 삽화로서 사용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었던 것이다. 끝으로, 원고는 원고 스스로 또는 B 부인이 S. 사진편집인에 대하여, 원고를 백은 위 사진은 오로지 B. 부티크를 위한 선전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알려준 사실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이 점에 관련하여, 원고는 특히 그의 1989 4. 7 자 준비서면에서 그리고 위 준비서면에 첨부된 B. 부인의 서면진술서에서, 원고와 B 부인은, 그 당시나 현재나 위 사진은 오로지 B.부티크의 선전만을 위하여 사용될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나 B. 부인이 이러한 사실을 S.씨에게 명백히 이야기해 준 일이 있다고는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